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시책 근거 마련〉

■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76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시책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5. 10. 23.
3. 회부일 : 2025.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Ⅲ. 검토의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시책 근거 마련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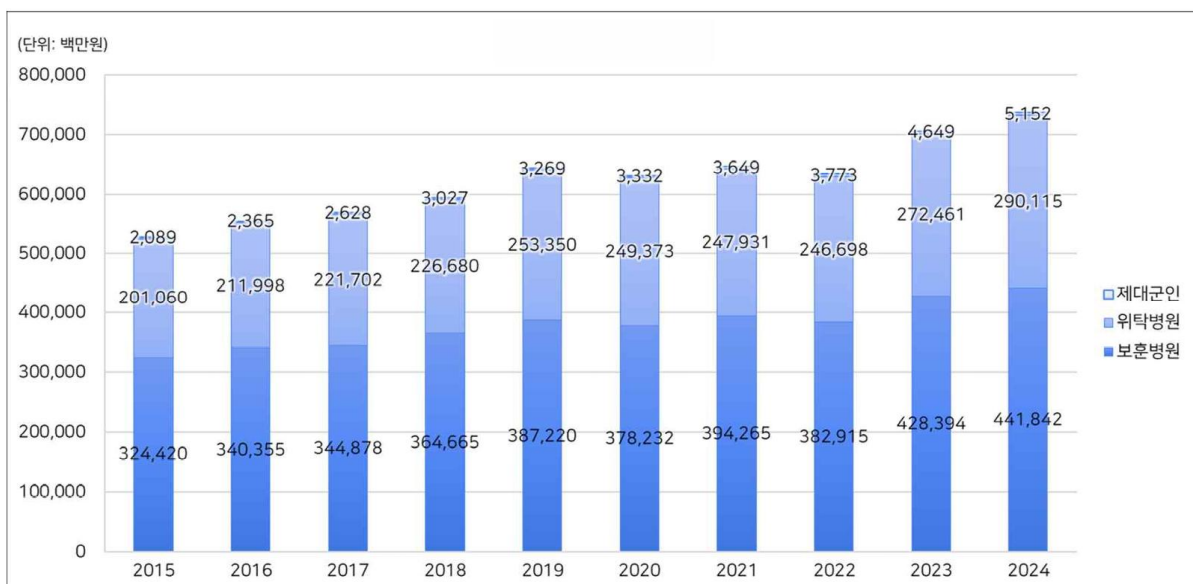
- 국가보훈부의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은 71세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의 82.1%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비율은 67.6%이며, 70대 이상의 경우 약 80% 정도가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는 부상, 가족의 사망 등 다양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울, 스트레스,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응답자의 21.5%가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

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¹⁾’의 4.8%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임을 알 수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정신건강에 취약한 특성 등에 따라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는데, 사업별 진료보상금 현황을 보면 코로나 기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회복기인 202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²⁾을 알 수 있음.

또한, 2025년 기준 ‘보훈의료’ 예산은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의 10.8%로, 보상금 등의 ‘보훈심사 및 보상 예산’(83.6%)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해 보훈의료가 보훈 정책의 중요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음.

<사업별 진료보상금 변화>



1)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2)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보훈병원 3.5%, 위탁병원 4.2%로 증가하였으며, 제대군인이 10.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정성출 외, 「보훈의료 진료비 예산 추계 개선 연구」, 국가보훈부 · (주)갈렙에이비씨, 2025.6., p.45).

(단위: 백만원)

연도	보훈병원	위탁병원	제대군인
2015	324,420	201,060	2,089
2016	340,355	211,998	2,365
2017	344,878	221,702	2,628
2018	364,665	226,680	3,027
2019	387,220	253,350	3,269
2020	378,232	249,373	3,332
2021	394,265	247,931	3,649
2022	382,915	246,698	3,773
2023	428,394	272,461	4,649
2024	441,842	290,115	5,152

자료: 정성출 외, 「보훈의료 진료비 예산 추계 개선 연구」, 국가보훈부·(주)갈렙에이비씨, 2025.6., p.45

<국가보훈부 2025년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 중 보훈의료 예산 비중>

구분	'25예산	비중
□ 사업비	6,097,616	100%
○ 보훈심사 및 보상	5,099,473	83.6%
○ 보훈단체지원	36,281	0.6%
○ 보훈의료복지 (보훈의료)	668,765 (658,036)	11% (10.8%)
○ 생활안정지원	28,952	0.5%
○ 보훈문화	92,530	1.5%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117,699	1.9%
○ 제대군인지원	34,860	0.6%
○ 보훈행정	19,056	0.3%

- 그런데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가보훈 기본법」은 ‘보상금 지급 의무’(제19조제1항), ‘생활안정·복지향상 등 시책 마련 의무’(제19조제2항)를 규정³⁾하고 있으나, 보훈 정책의 주요 영역인 의료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보훈 수요가 단순 생활지원을 넘어 의료·재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지원 정책의 수립과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7

3)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